

 <p><b>거창군</b> Geochang County</p> <p>공보는 공문서로서 효력을 갖는다.</p>	<h1 style="font-size: 2em;">공보</h1> <p>제850호 2022. 3. 23.(수)</p>	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선 결	기관의 장

## 고 시

- 거창군 고시 제2022-36호 도로명주소 고시 ..... 2
- 거창군 고시 제2022-37호 지적재조사사업 측량 조사 대행 고시 ..... 3

## 공 고

- 거창군 공고 제2022-482호 거창군관리계획(시설 도로) 결정(변경)(안) 열람 공고 ..... 4
- 거창군 공고 제2022-483호 거창군관리계획(시설수도공급설비) 결정(변경)에 따른 열람 공고 ..... 6
- 거창군 공고 제2022-490호 2022년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 공고 ..... 8

회 랑									
-----	--	--	--	--	--	--	--	--	--

발 행 : 거창군 편 집 : 기획예산담당관 (055-940-3043, 행정 3043)

※ 거창군 공보는 거창군 홈페이지(<http://www.geochang.go.kr>)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.

## 도로명주소 고시

「도로명주소법」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·변경·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2. 3. 23.

거창군수

○ 도로명주소 고시대상

- 건물번호 부여 :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거열로9길 136-4 등 8건

종전주소	도로명주소	도로명고시일	도로명 부여 (변경·폐지)사유	비고
(별 도 열 람)				

○ 도로명주소 사용

-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「도로명주소법」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합니다.
- 공공기관에서 비치·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(소재지)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.

○ 도로명과 건물번호의 부여·변경·폐지 등

-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부여·변경·폐지는 「도로명주소법 시행령」 제7조 및 제8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도로명은 「도로명주소법」 제8조 제2항에 따라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.

○ 참고사항

-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 이름, 동·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.
- 고시내용과 기타 사항은 거창군청 민원소통과(☎055-940-3313)로 문의하시거나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([www.juso.go.kr](http://www.juso.go.kr))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

# 지적재조사사업 측량·조사 대행 고시

「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」 제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22년 거창군 지적재조사사업 측량·조사 등 대행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2년 3월 23일

## 거 창 군 수

1. 책임수행기관 명칭 : 한국국토정보공사 경남지역본부
2. 사업지구의 명칭 : 2022년 거창군 지적재조사사업
3. 사업위치 및 면적 : 1,650필지, 661,773m<sup>2</sup>
  - 가. 원촌지구 : 거창군 웅양면 노현리 101번지 일원 / 549필, 198,248m<sup>2</sup>
  - 나. 원노현지구 : 거창군 웅양면 노현리 547-2번지 일원 / 357필, 138,213m<sup>2</sup>
  - 다. 무촌지구 : 거창군 남상면 무촌리 552-2번지 일원 / 368필, 139,433m<sup>2</sup>
  - 라. 대현지구 :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112-1번지 일원 / 376필, 185,879m<sup>2</sup>
4. 대행 업무 : 지적재조사측량 및 토지현황조사
5. 기타 문의 : 거창군청 민원소통과 지적재조사담당(055-940-3323)

## 거창군관리계획(시설: 도로) 결정(변경)(안) 열람 공고

거창군관리계획(시설: 도로) 결정(변경)(안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, 「거창군 계획조례」의 제7조에 따라 미리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2년 3월 23일

# 거 창 군 수

### 1. 거창군관리계획(시설: 도로)결정(변경) 조서

#### 가. 교통시설

##### 1) 도로

##### ■ 도로 총괄표

류별	합계			1류			2류			3류			비고
	노선수	연장 (m)	면적 (㎡)	노선수	연장 (m)	면적 (㎡)	노선수	연장 (m)	면적 (㎡)	노선수	연장 (m)	면적 (㎡)	
소로	1	121	1,079	-	-	-	1	121	1,079	-	-	-	

##### ■ 도로 결정 조서

구분	규모				기능	연장 (m)	기점	종점	사용 형태	주요 경과지	최초 결정일	비고
	등급	류별	번호	폭원(m)								
신설	소로	2	A	9	국지 도로	121	소로 2-294	소로 3-263	일반 도로	-	-	

##### ■ 결정(변경) 사유서

변경전 도로명	변경후 도로명	변경내용	변경사유
-	소로2류 A호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신설</li> <li>B = 9m</li> <li>L = 121m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가2지구 주택건설사업지(공동주택)의 원활한 진출입 위한 진입도로 신설</li> </ul>

2. 관계도서 : 게재생략(열람장소 비치)
3. 열람기간 : 신문게재 익일부터 14일간
4. 의견제출 : 위의 거창군관리계획 결정(변경)(안)의 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작성하여 열람 장소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5. 열람장소 : 거창군청 도시건축과
6. 기타 자세한 내용은 거창군청 도시건축과(055-940-3583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## 거창군관리계획(시설:수도공급설비) 결정(변경)에 따른 열람 공고

거창군관리계획(시설:수도공급설비) 결정(변경)(안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열람 공고 하오니,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2. 03. 23.

### 거 창 군 수

1. 거창군관리계획(시설:수도공급설비) 결정(변경) 조서

가. 수도공급설비 결정(변경)조서

구 분	도면 표시 번호	시 설 명	위 치	면 적(㎡)			최 초 결정일	비 고
				기 정	변 경	변경후		
변 경	1	거창정수장	거창읍 양평리 458-20번지 일원	22,912	증)3,010	25,922	거고43호 (2008.09.25.)	

나. 변경사유서

도면 표시 번호	시 설 명	변 경 내 용	변 경 사 유
1	수도공급 설비 (거창정수장)	○면적변경 - 위치 : 거창읍 양평리 458-20번지 일원 - 면적 : 22,912㎡→25,922㎡ (증3,010㎡)	○거창읍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확대에 따라 거창정수장을 증설하고자 함

2.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: 신문게재 익일로부터 14일간
3. 열람 및 의견제출 장소 : 거창군청 도시건축과
4. 의견 제출방법 :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내 거창군청 도시건축과에 서면  
으로 제출
5. 관계도면 : 실음 생략(열람장소 비치)
6. 기타 상세한 내용은 거창군청 도시건축과(☎055-940-3583)로 문의바랍니다.

# 2022년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 공고

거창군은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「2022년도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」을 실시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2. 3. 22.

## 거 창 군 수

### 1. 사업개요

- 사업내용 : ‘노후 건설기계’의 엔진을 Tier-3이상 엔진으로 교체완료한 경우 보조금 지급
- 사업기간 : 2022. 3. ~ 12.
- 신청기간 : 2022. 3. 22.(화) ~ 2022. 4. 4.(월)
  - ※ 사업비보다 신청자가 적은 경우 수시로 선정 추진할 수 있음
- 지원대상 : 공고일 기준 거창군으로 등록된 건설기계 중 ‘04년 이전 배출 Tier-1이하의 탑재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, 굴삭기 소유자
  - ※ 2004년 이전 제작된 것이나, 75kw 이상 130kw 미만은 ‘05년 이전 제작, 75kw 미만은 ‘06년 이전 제작된 건설기계 포함
- 사 업 량 : 21대(차종에 따른 지원금액 상이에 따라 사업량이 변동될 수 있음)
- 지원금액 (단위:천원)

구 분	지 게 차						굴 삭 기		
	2톤급		4톤급		6톤급		5톤급		14톤급
	Tier3	Tier4	Tier3	Tier4	Tier3	Tier4	Tier3	Tier4	
장치가격	9,366	11,493	14,996	18,000	16,620	19,295	12,992	14,386	20,354



## 2. 신청 및 지원대상(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)

- 공고일 기준 거창군에 등록된 건설기계
- 저공해엔진 인증을 득한 엔진을 부착(교체) 하여야 함
- 정부보조금 지원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건설기계
- 건설기계 소유자는 엔진교체 사업자의 엔진교체 가능여부에 대한 확인을 받아야 함
- 대상자 선정 조회일 기준 지방세 등(세외수입, 환경개선부담금 포함) 체납이 없는 건설기계

## 3. 사업절차



## 4. 신청방법 : 인터넷 신청

※ [붙임1] 엔진교체 제작사에 교체 가능여부 확인 후 신청

### ■ 인터넷 신청방법

“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” 홈페이지에서 신청(<https://emissiongrade.mecar.or.kr>)

회원가입 → 로그인 → 『저공해조치 신청』 클릭 → 『건설기계 엔진교체』 선택 →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 → 해당사항 입력 → 저공해신청 완료

<주의>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 본 신청기간이 아닌 기간에 신청한 사람은 기존에 저공해조치신청한 사항을 취소하고, 본 신청기간에 다시 신청하여야 함.

- 인터넷 신청 불가시 : [붙임 2] 건설기계 저공해 신청서, 건설기계등록증, 휴대폰, 우선순위 증빙서류 지참하여 군청 환경과 방문

## 5. 대상자 선정 기준 [우선순위 : ① → ②]

- ① 생계형 건설기계(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의한 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)
- ② 연식(제작연월일)이 오래된 건설기계(연식이 없는 경우 등록일자 적용)

○ 위 대상자 선정 기준 중 ①에 해당하는 경우는 인터넷 신청 후 아래의 서류를 제출해야 우선순위 지원이 가능함.

- 제출방법 : 방문, 우편, FAX(940-8914) 가능  
우편제출은 등기만 가능, FAX의 경우 필히 수신내용 확인
- 차량별 제출서류 :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, 차상위계층확인서

## 6. 대상자 선정 통보 및 이후 절차

- 선정 통보일 : 신청마감일 이후 10일 이내(문자 발송)  
※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 있을 수 있음
- 선정 이후 절차
  - 한국자동차환경협회 : 문자 및 전화로 부착대상 확인 및 적정장치 안내
  - 엔진교체 사업자 : 차량 상태 확인 및 계약 체결, 엔진 교체 등

## 7. 유의사항

- 의무사용기간(2년) 내 탈거하거나 수출폐차로 인하여 자동차 등록 말소 시 보조금 지급을 제한하거나 사용기간별 지원금액을 회수함  
※ 회수기준 : 「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」 별표21의2
- 장치 부착 후 성능검사 등을 위한 점검에 협조하여야함
- 보조금은 신청인이 계약을 체결한 장치제작사에게 거창군이 직접 지급하며, 취득세 등 관련 법령에 의한 지방세가 부과될 경우 자부담해야 함

## 8. 문의처 : 거창군 환경과 환경정책담당(☎ 055-940-3493)

## 9. 기 타

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「22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보조금 업무 처리지침」 및 거창군 유권해석에 따름

- 붙임 1. 건설기계 엔진교체 제작사 현황  
2. 건설기계 저공해조치 신청서  
3. 건설기계 엔진교체 인터넷 신청 방법

[붙임 1] 건설기계 엔진교체 제작사 현황

No	제작사	연락처	장치명(배기량 기준)
1	(주)이알인터내셔널	1588-8395 031-940-2560	○ 지게차 : 2톤급, 4톤급, 6톤급 ○ 굴삭기 : 5톤급, 14톤급
2	(주)알오씨 오토시스템	031-270-6358	○ 지게차 : 2톤급 ○ 굴삭기 : 5톤급, 14톤급
3	(주)크린어스	1577-9014	○ 지게차 : 2톤급, 4톤급, 6톤급 ○ 굴삭기 : 5톤급
4	HK-MnS(주)	1588-7657 070-4267-2727	○ 지게차 : 2톤급, 4톤급, 6톤급
5	(주)이엔드디	1644-2402 02-2029-7034	○ 지게차 : 2톤급, 4톤급, 6톤급 ○ 굴삭기 : 5톤급
6	(주)세라컴	02-2628-0900 041-531-0657	○ 지게차 : 2톤급, 4톤급, 6톤급

[붙임 2]

## 건설기계 저공해조치 신청서

신청 건설기계	건설기계번호	소유자 성명
	차대번호	건설기계명
	연락처 (휴대전화) (팩스번호)	
	소유자 주소	
저공해조치 신청	신청일자 :           년           월           일	
우선순위 여부	생계형 건설기계( 여 / 부 ) 제출서류 -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, 차상위계층확인서	
위 건설기계에 대하여 「대기환경보전법」 등 관련법 및 규정에 따른 저공해조치를 신청하오니 신청에 따른 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
년           월           일		
<b>소유자명</b>		
서명		
(개인정보 수집 · 이용 동의에 관한 사항)		
귀하께서 본 신청서에 기재하신 사항(주소 및 연락처 등)은 저공해조치 안내 등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업무대행기관(자동차환경협회)과 관련 전산망 설치·운영기관(한국환경공단) 등에서 이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, 본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.		